

2026년 소량수출 국제특송비 지원계획 수정 공고

우리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샘플 등 소량에 대한 수출 물류비 (항공+해운)의 일부를 지원코자 아래와 같이 2026년 소량수출 국제특송비 지원계획을 수정 공고(신청서 제출 이메일 변경)하니,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. 3. 16.

전라남도지사·전남지방우정청

1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6. 1. ~ 12.(예산 소진 시까지)
- 지원내용 : 국제특송(해운 포함) 해외물류비 실 사용금액의 50%
 - (항공) EMS 국제특송비의 50% 지원 * EMS 우편요금 12% 선할인(우체국)
 - (해운) 우체국 해운 운송비(화물물류연계서비스*)의 50% 지원
- * CJ대한통운, KW International 등 민간 물류회사와 우체국이 제휴하여 고증량 화물을 파렛이나 컨테이너 형태로 발송하는 서비스
- ※ 화물 발송 전 세부 품목 및 대상 국가 등에 대한 상담 필요
- 지원기준 : 기업당 월 50만 원 / 연간 300만 원 한도(예산 소진 시 한도 내 지원)
 - 우정사업본부를 통해 매월 사용 실적을 확인 후 익월 지급 예정

2. 지원대상

- 전라남도 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수출중소기업
 - ※ 전년도 수출 2천만불 이하 또는 수출 전환(준비) 기업
- 지원제한
 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휴·폐업 중인 기업
 -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기업

3. 지원절차



4.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

○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(①→②)

① 전라남도 수출정보망 로그인 후 '지원사업신청' 작성

② 사업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및 업체 통장 사본 등을 이메일 송부

※ 관련서류는 전라남도 수출정보망 및 전남지방우정청 누리집에 공지

- 전라남도 수출정보망 : <http://www.jexport.or.kr>

- 전남지방우정청 : <http://www.koreapost.go.kr/jn> 공지사항

○ 제출기관 :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(유촌동) 전남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

(☎ 062-600-4633, 팩스 0505-005-1822, 이메일 dy11223@korea.kr)

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신청서

전라남도과 귀 청에서 시행중인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에 참가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업 체 명			대표자	
사업자 등록번호			무역업 고유번호	
소 재 지	본사			
	공장			
수출품목			HS코드	
자본금 (부채비율)	(백만원 %)		매출액 (전년도)	백만원
수출실적 (전년도)	금 액	(US 천\$)	내수액	백만원
	국 가		종업원수	명
업체계좌	※ 지원금액 입금용 (필히 업체명의계좌)			
특이사항	특허 및 규격인증	예 : 특허권, 상표권, 실용신안, 의장권 등		
	정부 단체지정	예 : 벤처기업인증, 우수중소기업지정, 이노비즈 등		
EMS(해운 포함) 활용	주요 발송품목			
	월평균 이용물량	통	월평균 이용금액	천원
담당자	전 화		팩 스	
	성 명		E-Mail	
	직 위		핸드폰	
이용우체국				

※ 추가제출서류

- 사업자등록증, 업체명의 통장 사본, 전년도 재무제표,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,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각 1부

2026년 월 일

신청인 기업명 :

대표자 :

(인)

전라남도지사, 전남지방우정청장 귀하

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①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수집·이용목적	① 중소기업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
	②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(만족도 조사)
수집·이용항목	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, 업종, 매출액, 납입자본금, 자산 총액, 부채총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, 개업일·휴업일·폐업일, 전자계산서 발급액, 전자지급 거래액, 일반연구·인력개발비, 현금영수증 결제금액, 신용카드 결제금액,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, 품목 번호, 총 신고가격, 목적지, 신고일
	②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(전화번호, 이메일 등)
수집·이용기관	· 중소벤처기업부
수집·이용기간	·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

② 기업(신용)정보의 파기

파기대상 정보	·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·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, 이메일 등
파기절차 및 방법	·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,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·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

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·이용·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,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.

※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0 년 월 일
기업명 ○○○
대표자 ○○○ (인)